

HOME > 물질규제정보 > 물질규제정보

물질규제정보

물질규제정보

법규정보 상세정보

물질규제정보

수산화나트륨

CAS No.	1310-73-2	UN No.	1823	KE No.	KE-31487	EU No.	215-185-5
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

국내 규제

산업안전보건법

금지물질	허가대상물질	관리대상유해물질	특별관리물질	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
		✔		6개월
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	노출기준설정물질	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	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	영업비밀 인정제의 물질
	✔			✔

화학물질관리법

기존화학물질	인체급성 유해성물질	인체만성 유해성물질	생태 유해성물질	금지물질
✔	✔			
제한물질	허가물질	사고대비물질		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

기존화학물질	인체급성 유해성물질	인체만성 유해성물질	생태 유해성물질	금지물질
✔	✔			
제한물질	허가물질	중점관리물질	*유해성 미확인물질	
			-	

* 화평법 제2조10의3 에 따른, '유해성미확인물질'이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, 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함.

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위험물	지정수량

목록